약사 포상시상 규정

약사 포상시상 규정

제정 1982. 11. 22
개정 1985. 11. 15
개정 1990. 2. 8
개정 1993. 2. 11
개정 2001. 12. 1
개정 2005. 2. 15
개정 2005. 8. 30
개정 2007. 10. 2
개정 2008. 2. 14
개정 2010. 4. 1
개정 2012. 12. 20
개정 2013. 12. 19
개정 2014. 11. 18
개정 2015. 5. 14
개정 2017. 6. 8
개정 2017. 12. 21
개정 2021. 5. 3
개정 2021. 9. 28
개정 2023. 2. 23
개정 2024. 2. 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5조 및 약사윤리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을 함에 있어 동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포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5.11.15)

제 2 조【포상의 종별 및 명칭】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종별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약사금장 (후원 : 지오영(주)) (개정 90.2.8, 14.11.18)
2. 약연상 (후원 : (주)한독) (개정 17.6.8)

3. 약사금탑상 (후원 : 수석문화재단(동아제약(주))) (개정 23.2.23)
4. 여약사대상 (후원 : 일동제약(주))
5.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 (신설 13.12.19, 개정 14.11. 18, 15.5.14, 24.2.15)
6. 약사봉사대상 (후원 : 가송재단(동화약품(주))) (신설 17.6.8, 개정 21.9.28, 23.2.23)

제 3 조【심사위원회】 대상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약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다만, 여약사대상 및 약사봉사대상 심사의 경우 여약사 담당부회장과 여약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10.4.1, 17.6.8. 17.12.21, 21.9.28, 23.2.23)

제 2 장 시 상

제 4 조【대상의 구분 및 시상】 이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시상은 본회 회장명의로 한다.

1. 대한약사금장(개정 85.11.15, 90.2.8, 12.12.20, 14.11.18)
 ㅇ 시상인원 ····· 5인 이내
2. 약연상
 ㅇ 개국약사부문 ····· 5인 이내(개정 85.11.15, 05.2.15, 12.12.20)
3. 약사금탑상
 ㅇ 개국약사부문 ····· 1인(개정 05.2.15, 10.4.1)
 ㅇ 약학연구부문 ····· 1인
 ㅇ 공직·병원·제약부문 ····· 1인(개정 10.4.1, 12.12.20)
 ㅇ (신설 10.4.1, 삭제 12.12.20)
 ㅇ (신설 10.4.1, 삭제 12.12.20)

ㅇ 사회봉사부문 ····· 1인(신설 85.11.15)

ㅇ 약사회발전부문 ····· 1인(개정 05.2.15, 10.4.1)

4. 여약사대상

ㅇ 여약사 ····· 5인 이내(개정 85.11.15, 05.2.15, 12.12.20)

5.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신설 13.12.19, 개정 14.11.18, 15.5.14, 24.2.15)

ㅇ 일반회원 ····· 3인 이내

6. 약사봉사대상(신설 17.6.8, 개정 21.9.28)

ㅇ 시상인원 ····· 5인 이내(개정 21.9.28)

제 5 조【시상일】 대상의 시상은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상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시상일에 시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시상일에 시상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85.11.15, 개정 90.2.8, 99.11.8, 01.12.1, 24.2.15)

1. 대한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은 약사포상시상식(개정 24.2.15)

2. (삭제 24.2.25)

3. (삭제 24.2.25)

4. 여약사대상은 전국여약사대회(개정 07.10.2, 17.12.21, 24.2.15)

5. (삭제 24.2.25)

6. 약사봉사대상은 이사회(신설 17.6.8, 개정 17.12.21, 21.9.28, 24.2.15)

제 6 조【시상품】 대상의 시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상품은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단서신설 85.11.15)

1. 대한약사금장은 상패와 순금 두 냥의 소정의 흉장

2. 약연상은 본상과 순금 두 냥의 메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개정 10.4.1, 21.5.3)

3. 약사금탑상은 트로피와 순금 두 냥의 메달(개정 10.4.1)

4. 여약사대상은 트로피 및 순금 두 냥의 메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개정 21.5.3)
5.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은 상패와 순금 두 냥의 메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신설 13.12.19, 개정 14.11.18, 15.5.14, 21.5.3)
6. 약사봉사대상은 상패와 순금 두 냥의 메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신설 17.6.8, 개정 21.5.3, 21.9.28)

제 3 장 수상후보자 접수

제 7 조【공고 및 접수】 ①모든 대상은 시상일로부터 2개월전에 약사공론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8조제2항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며, 서류 마감기일의 계산은 우편일 경우에는 날인된 우편접수 일부인에 표시된 날짜로 한다.

③제1항의 공고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상부문
2. 서류마감기일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시상일
6. 수상자 결정의 통보방법
7. 추천방법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 조【추천】 ①대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한약사금장 및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의 추천권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추천인단으로 한다.(개정 93.2.11, 13.12.19, 14.11.18, 15.5.14)

1. 대한약사회 지부장
2. 약학대학(과)장
3. 병원·생산·공직회원이 봉직하는 기관, 단체장 또는 회사의 대표
4.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여약사대상 및 약사봉사대상에 한함) (신설 85.11.15. 개정 10.4.1, 17.12.21, 21.9.28)

②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추천기관, 단체 등의 공문)
2. 대상후보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3.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4. 연구실적보고서(필요한 부문에 한함)
5. 기타 본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4 장 심 사

제 9 조【심사방법】 ①대상후보자의 심사는 추천된 서류에 의하여 각 부문별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삭제 85.11.15)

제 10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개정 85.11.15)
2.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자
3. (삭제 85.11.15)
4.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5 장 수상자선정

제 11 조【심의】 위원회의 심의는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수상자확정】 대상수상자는 위원회 심사 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개정 85.11.15)

제 13 조【결정의 취소】 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상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4 조【통보】 ①수상자의 결정통보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개정 24.2.15)

②수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 보존한다.(신설 24.2.15)

제 6 장 보 칙

제 15 조【수당과여비】 수상 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는 본회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8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모범약사대상은 1983년 회계 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여약사대상심사규정, 약연상심사규정 및 약사금탑상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5.11.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2.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1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2.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8.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1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2.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4.1)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12.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12.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11.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5.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6.8)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12.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5.3)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1.9.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3.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4.2.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조 서 (甲)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근무처명 (약국명)		면허번호	
근무처 소재지			
소속및직위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 별도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관 지부(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190 ㎜ × 268 ㎜ 모조지 60 g/㎡

공 적 내 용 (乙)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05.8.30)

20 년도 포상대장

발급번호	시상구분	소속	성명	직책	시상일	시상석상	비고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대약 제20 - 호							